

이의신청 (부동산학개론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문제 3번)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① ㉠ : 건축면적, ㉡ : 4층 ② ㉠ : 건축면적, ㉡ : 4개 층
③ ㉠ : 바닥면적, ㉡ : 4층 ④ ㉠ : 바닥면적, ㉡ : 4개 층
⑤ ㉠ : 대지면적, ㉡ : 4층

(1) 가답안 : ④

(2) 이의신청 주장내용 : ③,④ 복수정답

(3) 주장의 근거

- ① ‘다세대주택은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공동주택에 대한 별표의 설명에서 사전적으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층’과 ‘개층’의 구분 실익이 없다.
- ② 개론의 측면(각종 포털 검색이나 부동산 용어사전 등)에서는 층과 개층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다.
- ③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분류는 학문적 분류를 의미하는데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출제하는 것은 시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